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도 '커피전문점'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고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콘텐츠에서는 '커피전문점'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커피전문점'창업 및 운영에 관한 수요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 · 운영 1
1. 커피전문점 4
1.1. 커피전문점 4
1.1.1. 커피전문점 창업 4
2. 사전 준비 6
2.1. 창업형태 결정 6
2.1.1.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 6
2.2. 입지 선정 11
2.2.1. 상권 및 입지분석 11
2.3. 자금계획 14
2.3.1. 자금지원 14
3. 창업준비 16
3.1. 점포계약 16
3.1.1.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16
3.1.2. 임대차계약 18
3.2. 영업신고 22
3.2.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22
3.2.2. 영업승계 신고 25
3.3. 영업시설 26
3.3.1. 인테리어 공사 26
3.3.2. 영업설비 28
3.3.3. 상호 및 광고물 31
3.4. 자재구매 35
3.4.1. 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35
4. 운영 39
4.1. 매장운영 39
4.1.1.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유의 사항 39
4.1.2. 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40
4.2. 종업원 채용 43
4.2.1. 종업원 채용 43
4.2.2. 4대 보험 45
4.3. 세금 47
4.3.1. 세금의 납부 47
5. 폐업 55
5.1. 폐업 신고 55
5.1.1. 폐업 신고 55

1. 커피전문점

1.1. 커피전문점

1.1.1. 커피전문점 창업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인'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개요

사전준비

▪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 개인의 경험 및 자금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적합한 창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창업의 형태를 결정했다면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안내(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

▪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 예비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가지게 됩니다.

▪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영시설 완비

▹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 및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

▪ 고객관리

▹ 개업 후에는 재고 상태를 점검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운영 시 유의사항

▹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최저임금, 휴게시간 및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세금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2. 사전 준비

2.1. 창업형태 결정

2.1.1.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 ※ **창업의 형태 결정**
>
>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사업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창업비용과 향후 점포운영에 관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
> 창업자는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독립창업과 가맹사업 창업의 사업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 자신의 경험, 투자여력, 경영능력, 경영의지 등을 고려하여 창업 형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의 형태

▪ 커피전문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창업 의의

▪ "독립창업"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경영형태를 말합니다.

▪ 독립창업은 자기만의 노하우(know-how)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하는 방법, 창업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방법 및 기존에 영업 중인 매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커피전문점 독립창업 시 커피 메뉴 조리법 습득 방법
>
> 커피전문점 창업 시 가맹사업 창업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레시피에 따라 메뉴를 조리하면 되지만 독립창업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의 컨셉에 맞는 메뉴 조리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메뉴 조리법을 습득하는 방법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또한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바리스타 자격증의 경우 아직 국가공인화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 √ 한국커피협회(http://www.kca-coffee.org)
>
> √ 한국검정평가원(http://www.kied.kr)
>
> √ 한국식음료외식조리교육협회(http://www.ncook.or.kr)

가맹사업 창업의 의의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독립창업 및 가맹사업 창업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가맹사업 창업	독립창업
장점	·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 가맹사업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사업에 비하여 높습니다.
단점	·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 가맹본부에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 가맹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 가맹사업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

▪ 가맹점 운영 경험자와의 상담, 창업박람회 참석,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 ※ 업종에 따른 가맹본부별 가맹점수, 초기투자비용 등 현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적격 가맹본부 후보 선정

▪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적격 가맹본부 후보로 선정 합니다.

항 목	확인사항
상품·서비스 수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경쟁 우위성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사업운영능력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가맹본부의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가맹본부의 경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운영 등)을 갖고 있는가?
성장성/내실경영	·가맹본부가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가맹본부 후보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가맹본부”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필요한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만들어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계약서의 확인

▪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조문별 내용을 검토하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합니다.

※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표준가맹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의 보류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체적 측면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맹본부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반드시 보류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조치 및 가맹금 반환 요구

▹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② 공정위에 신고, 또는 ③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입지 선정

2.2.1. 상권 및 입지분석

매장성공의 절대적인 요인은 상권 및 입지선정에 있습니다.

상권조사

> **※ 상권조사의 주요항목**
>
> 1. 통계자료조사 : 인구수, 세대수,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복합형)
> 2. 상권형태 및 규모 파악 :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 3. 통행인구 조사 :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파악
> 4. 통행차량조사 : 통행차량의 수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지나가는지 파악
> 5. 경쟁점포조사 :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 6. 상권의 향후 전망조사 :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 개발계획 등 파악
>
> < 창업준비 10단계, 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p >

상권정보의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입지와 업종선정을 돕기 위해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공내용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전국 동별로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 해당 지역의 상권특성, 상권현황, 노하우, 지원정책, 교육관련 정보의 제공

▹ 상권에 대한 해당 업종의 진입여부 결정을 위한 과밀정보의 제공

▹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 지도 제공

특별히 커피전문점에 적합한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피전문점 창업가이드 32p. ~ 40p.를 참고합니다.

커피전문점 적합입지

▪ 커피전문점의 입지는 직장인을 공략할 수 있는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젊은 층의 유동이 많은 대학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등에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의 분포가 증가되어 입지를 결정할 때, 경쟁점포와의 거리, 목표고객의 동선 상에 입지가 위치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후보입지가 중간에서 경쟁점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는 입지가 아닌지 등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입지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따라서 후보입지에 경쟁점의 분포도, 영업상태, 그밖에 다른 업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권의 발전정도를 유추해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지의 특성에 따라 커피전문점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개점 시에 영업 전략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상권세력의 특성 파악

▪ 상권세력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항목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인구수 및 세대수, 주거형태, 연령별 인구수, 소비 형태, 직업분포, 교육정도 등입니다.

▪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파트의 총 세대수와 평형별 구성 비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형평형 밀집지역이 소매상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지출비중이 높습니다.

유동 인구의 특성 파악

▪ 점포 앞 유동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점포의 우열이 가려지며, 또한 유동인구의 특성에 따라 업종의 적합성이 결정됩니다.

▪ 유동인구의 조사는 보통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로 조사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2시, 주부들의 쇼핑시간인 오후3~4시, 퇴근 무렵인 오후 6~8시로 나누어 조사하도록 합니다.

▪ 후보지 앞의 유동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점포로의 내점률도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점포의 내점률 파악은 인근의 유사업종의 현황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점포 이용편리성의 파악

▪ 점포는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것을 '점포의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특별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대부분 접근하기 편한 점포를 이용합니다.

▪ 점포 근처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건널목이 있는지, 점포의 출입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주차시설은 갖추었는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지도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 또한 상권 내에 있는 학교, 극장, 관공서, 대형서점과 같은 인구유발 요소가 접근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므로 사람들이 그런 시설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점포를 내면 점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밀집지역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고 상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용률의 확인 및 아파트세대의 주동선과의 연결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요인 점검

▪ 대중교통밀집지역은 점포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역세권 주위에서 점포입지를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교통수단의 이용계층이 주로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해서 고객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점포를 구해야 합니다.

▪ 전철역세권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어느 출구 쪽이 가장 유동의 흐름이 왕성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동인구의 특성 또한 파악해야 합니다.

경쟁점의 강·약점 조사

▪ 아무리 상권이 뛰어나고 좋은 입지를 선정했다고 해도 이미 그 상권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포화상태라면 개점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점 조사를 하는 목적은 상권 내에 출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평가하며, 출점이 가능하다면 경쟁점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수립해야 합니다.

▪ 경쟁점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 점포의 인지도
- 매장크기
-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
- 가격전략
- 주이용고객층
- 영업시간
- 1일 이용객수

▪ 경쟁점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고 주위에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경우에도 상호간에 상승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상권의 발전성 점검

▪ 입지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현재의 입지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상권의 변동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발전가능성을 점검할 때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하철역입니다. 역의 개통은 상권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또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상권이 발전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권 내에 대형관공서, 고층 건물, 학원 등의 신축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확장 가능성 여부도 상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에 맞는 입지 선정

▪ 점포를 찾다보면 마음에 드는 점포는 권리금 등 고정투자비용이 매우 높고, 자신의 자본규모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지조건에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자금계획을 세우거나 주변 지역보다 비싼 권리금을 지불하는 등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영업에 전력을 쏟기가 어렵습니다.

▪ 창업에 있어서 자금은 창업투자소요금액에 약 1.5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자본의 60~70%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출액과 투자금액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보이는 매출액에 현혹되어 점포 입지를 정해서는 안 되고

점포비용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2.3. 자금계획

2.3.1. 자금지원

커피전문점 창업 시 부족한 자금은 창업자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창업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의 <자금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하세요.

지원대상

▪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 참조).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사업자)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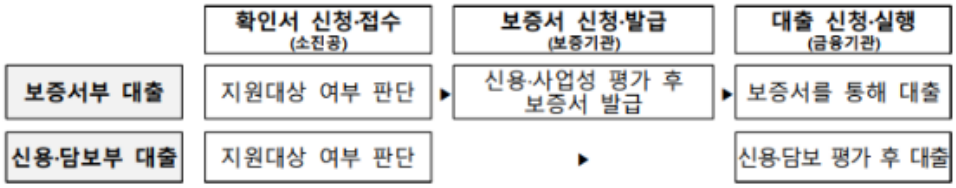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이내)

▪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잔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지원절차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서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창업준비

3.1. 점포계약

3.1.1. 상가건물에 대한 확인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임차하려는 건물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개념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 토지대장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여부,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수용여부 및 업종제한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公簿)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사항

▪ 등기부의 갑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참조).

-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 등기부의 을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참조).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가건물은 피해야 합니다.
-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2014. 7. 1. 부터 발급)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2015. 7. 1. 부터 발급)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www.onnara.go.kr) 을 이용하면 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에 필요한 중요내용과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한 후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작성 및 특약사항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8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참조).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제6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받은 공제증서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5호).

√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8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요건의 완비

▪ 개념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 발생요건

▹ 임차인은 임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① 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효력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 대항력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및 보증금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상가건물 임대차계약-보증금의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 개념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 우선변제권의 요건

▹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 효력**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2)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③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④ 그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 그 밖의 지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

▹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5항).

권리금 적용 제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권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의 <임대차의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권리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영업신고

3.2.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 신고서 제출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신고관청의 영업신고증 발급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록신청절차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관할 세무세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3.2.2. 영업승계 신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영업신고증
-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3.3. 영업시설

3.3.1. 인테리어 공사

차별화된 컨셉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진행 포인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피전문점 창업가이드 참고)

- 운영자의 개성과 독창이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 주변의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을 추구합니다.
- 주 고객층을 어느 연령대로 잡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 인테리어의 수명은 3년을 주기로 잡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해 이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때 그 때 적당한 투자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어 유행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고객만족을 일으키는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합니다.
-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점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커피전문점 영업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 ※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좋습니다.
>
>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보수의 지급

- 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56조제2항 및 제665조).
  - 명확한 진행을 위해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

- 하자보수 기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커피전문점 영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커피전문점 영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9조).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3.3.2. 영업설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의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칸막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나목1)나)]

▪커피전문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객실을 둘 수 있습니다.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나목1)다),라)]

▪운송수단 등에서의 안전시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바닥면적에 따른 안전시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가목1) 및 나목1)마)]

▪영업장의 구비설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장의 금지 설비

▹ 공연을 하려는 커피전문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 · 기계 · 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 · 기계 · 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가목2)]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의 조리장의 경우

▹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장의 공동사용

▹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①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급수시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가목3)]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가목4)]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제8호가목5)]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백화점 등의 경우

-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라)].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 상호 및 광고물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선정

▪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등기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등기절차

▹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

▪ 상표의 개념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등록

▪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상표등록의 효력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상표법」 제230조).

▪ 상표권 등의 이전

▹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8조제2항).

▪ 상표등록출원 신청

▹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36조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상표등록출원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제외)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함)

√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시디롬(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동작상표의 등록출원만 해당)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간판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간판의 설치

▪ 옥외광고물의 개념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 입간판의 경우 1개

√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되 부당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물 등의 준비

▪ 창업 전 사업체를 홍보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으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홍보 시 유의사항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기만적인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광고

3.4. 자재구매

3.4.1. 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커피 및 부자재를 구입하세요.

커피머신 등 구입하기

▪ 커피전문점 운영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는 커피머신입니다.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또한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점검·관리가 용이한 커피머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 커피머신의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구입 및 임대사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주거래처 정하기

▪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참고하세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유의사항

▪ 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 신고서 제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입식품등의 사진(한글 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천역색 사진을 말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

√ 위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신고기간

▹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위반 시 제재

▹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수입 신고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수입신고자의 책임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위의 수입신고자의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수입검사 의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 수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수입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4. 운영

4.1. 매장운영

4.1.1.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유의 사항

재고와 비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세요.

재고 및 비품관리

▪ 개점시간 직후와 폐점시간 직전에 매장설비, 비품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3p).

▪ 3개월이 지났을 때 재고 상황이 어떤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5p).

원가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 하세요.

자금관리

▪ 원가의 비율을 줄여 매출총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3p).

▪ 판매 및 일반관리비(지출경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3p).

▪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3p).

단골 확보로 성공을 잡으세요.

고객관리

▪ 고객 개개인의 구매특성과 취향을 파악하고, 고객리스트와 판매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팔리는 상품의 비율을 높이고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의 비율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293p).

> ※ **경쟁력 있는 점포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
> • 올바른 접객용어를 사용합니다(어서 오십시요. 감사합니다. 5만원을 받았습니다. 등).
>
> • 다른 업무를 보는 중이라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접객에 응합니다.
>
> • 포장은 기준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
> • 접객의 문제점을 시정한 개선안을 직원들에게 지시합니다.
>
> • 주문서나 견적서 글자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반듯하게 씁니다.
>
> • 손님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둡니다.
>
> • 불량품을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 • 진열은 기획대로 깔끔하게 갖춥니다.
>
> • 먼저 팔린 상품을 정리하고 불량품을 체크합니다.
>
> • 광고내용과 상품을 일치시킵니다.

- 품절상품은 반드시 그날 발주합니다.
-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 점포 근무 중 개인적인 용도의 전화는 될 수 있는 한 삼가합니다.
- 나이 어린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 외모는 항상 깔끔해야 합니다.
- 직원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손님이나 외부인 앞에선 직원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 경비를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합니다.

< 창업다이어리,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296p >

4.1.2. 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별표 2).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식품위생교육의 방법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되,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교육시간

▪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 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교육교재

▪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그 밖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중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종업원 채용

4.2.1. 종업원 채용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의 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하는 것 잊지마세요~!!

위반 시 제재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청소년의 보호

▪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

※ 근로청소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근로청소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 후 휴일의 보장

▪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4.2.2. 4대 보험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의무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다만,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국민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자의 신고

▹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 사업장의 신고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사업자의 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4대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자영업자 사업 고시」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 기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②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②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③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④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정보 – 자영업자고용보험 >

4.3. 세금

4.3.1. 세금의 납부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모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 단서).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된 경우(「소득세법」 제74조)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를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

※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그 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당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4항 및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참조>

신고방법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사업자 인적 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매년 발생되는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신고 및 납부

▪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

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 8,406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중간예납기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방법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과세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과세기간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①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면세사업

▪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

▹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 여객운송 용역(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및 방송 등(다만, 광고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 담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특수용담배로서 수출하거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 금융·보험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토지

▹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개인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간이과세자

▪ 개념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숙박업 : 25퍼센트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함),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퍼센트

  √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간이과세자 신고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www.nts.go.kr) – 누리집 안내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상공인이 연 1,8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5. 폐업

5.1. 폐업 신고

5.1.1. 폐업 신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

▪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후단).

▪ 이와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음식점 등의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므로, 다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 폐업신고는 업종별로 면허·허가·신고·등록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등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폐업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사이트 –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부가가치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본문).

▪ 부가가치세의 납부

▹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 종합소득세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
>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세금의 납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